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674
----------	-------

발의연월일 : 2026. 7. 1.

발 의 자 : 신장식 · 서왕진 · 김재원  
황운하 · 이강일 · 차규근  
강경숙 · 박은정 · 김준형  
정춘생 · 백선희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별 조합의 검사·감독업무는 중앙회장이 대표권을 가지  
되 검사·감독이사가 그 업무를 독립적으로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도  
록 중앙회장이 권한의 위임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조합 검사·감독 업무에 중앙회장의 영향  
력이 쉽게 미치고 있어 해당 업무수행의 독립성이 침해되고 있음.

동일한 상호금융업권인 농업협동조합의 경우 농협중앙회에 조합감  
사위원회를 두고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장이 회원의 감사에 대한 독립  
적인 검사권과 대표권을 가지도록 하여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음.

이에 중앙회의 검사·감독이사에게도 개별 조합에 대한 독립적인  
검사 및 제재의 권한과 그 대표권 및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인사에 대해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검사·감독 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중앙회의 조합 관리·감독 기능을 제고하고자 함

(안 제72조 및 제73조제1항 등).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 단서 중 “제2항에 따라 신용·공제사업 대표이사가 전담하는 업무”를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신용·공제사업 대표이사 또는 검사·감독이사가 각각 전담하는 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중앙회장은 검사·감독이사가 소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의 위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를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로 한다.

제73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72조제2항에 따른 신용·공제사업 대표이사의 소관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과 제7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검사·감독이사의 소관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임면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신용·공제사업 대표이사와 검사·감독이사와의 협의를 거쳐 중앙회장이 한다.

제76조의2제2항 후단 중 “중앙회장 또는 신용·공제사업 대표이사”를 “중앙회장, 신용·공제사업 대표이사 또는 검사·감독이사”로 한다.

제76조의4 중 “중앙회장 및 신용·공제사업 대표이사”를 “중앙회장, 신용·공제사업 대표이사 및 검사·감독이사”로, “검사·감독이사 또

는 직원”을 “직원”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앙회장이 한 행위와 중앙회장에 대한 행위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업무를 전담하는 검사·감독이사의 행위 또는 검사·감독이사에 대한 행위로 본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2조(임원의 직무와 임기 등)</p> <p>① 중앙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하고 중앙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신용·공제사업 대표이사가 전담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③ (생략)</p> <p>④ 검사·감독이사는 제7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합에 대한 검사·감독업무를 전담처리하며, 중앙회장은 검사·감독이사가 소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의 위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⑤ ~ ⑨ (생략)</p> <p>제73조(직원) ① 직원은 중앙회장이 임면한다. 다만, 제72조제2항에 따른 신용·공제사업 대표이사의 소관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임면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공제사</p>	<p>제72조(임원의 직무와 임기 등)</p> <p>① ----- -----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신용·공제사업 대표이사 또는 검사·감독이사가 각각 전담하 는 업무----- ----- -----</p> <p>②·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p> <p>⑤ ~ ⑨ (현행과 같음)</p> <p>제73조(직원) ① ----- ----- -----다만, 제72조제2 항에 따른 신용·공제사업 대 표이사의 소관 업무에 종사하 는 직원과 제7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검사·감독이사의 소관</p>



제76조의4(대리인의 선임) 중앙회  
장 및 신용·공제사업 대표이사  
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검사·감독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중앙회의 업무에 관하  
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  
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  
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제76조의4(대리인의 선임) 중앙회  
장, 신용·공제사업 대표이사  
및 검사·감독이사-----  
-----직원-----  
-----  
-----  
-----  
-----.